고용노동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2. 2.(월) 석간

노동부 강원지청, 겨울철 한파 취약사업장 및 화재·폭발 예방 집중점검 실시

- 2월 1~2주 **한랭질환·화재·폭발예방 집중점검**
- **소규모 사업장** 추락·끼임·부딪힘, 보호구 지급·착용 **상시 패트롤 점검**

고용노동부 강원지청(지청장 김상용)은 **2월 1 ~ 2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과 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**한다고 밝혔다.

최근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건설현장 등 **옥외작업 근로자의 한랭질환**과 난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화기에 의한 **화재·폭발로 중대재해 발생이 매우 우려**되는 상황이다.

이에, 관내 **한랭질환·화재·폭발 등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**을 선정하여 **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불시점검**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.

특히, **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패트롤팀을 설치·운영 운영**하여, **추락·끼임·부딪힘 위험 방지 및 보호구 지급·착용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**하고, 위반 사항의 적발이 반복되거나 안전보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**엄중하게 조치**할 계획이다.

이와 관련하여, **김상용 강원지청장**은 2월 2일(월) 오후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**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**하였다. 이날 방문한 건설현장은 지난 달 화재로 노동자 5명이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, **재해자 부상 정도 및 치료·지원 상황을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절 여부와 함께 한파에 의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현황 등을 집중 점검**하였다.

김상용 강원지청장은 “매년 겨울 한파, 화재·폭발과 같은 위험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, **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**” 할 것을 당부하면서, “향후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감독, 상시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**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다.**”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감독과	책임자	과 장	유정민 (033-269-3580)
		담당자	근로감독관	서승진 (033-269-358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가평군 청평면 아파트 신축현장 불시점검 사진**

<사진1>

<사진2>

붙임2 겨울철 한파로 인한 「한랭질환 예방 수칙」

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

18개 모국어 번역본

- **한파**에 장시간 노출되면 **저체온증, 동상, 동창 등의 한랭질환**과 **뇌심혈관질환**이 **발생**하거나 **악화**될 수 있습니다.
- 작업 전에 **반드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전 점검**하고 **미흡한 사항은 조치**하세요.

❄ 한파특보 발표기준

한파주의보	▸ 아침 최저기온이 **영하 12℃**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**10℃** 이상 하강하여 **3℃** 이하 예상될 때 등
한파경보	▸ 아침 최저기온이 **영하 15℃**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**15℃** 이상 하강하여 **3℃** 이하 예상될 때 등

※ 세부사항은 기상청 시행령 [별표1] 특보기준 참고

❄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

따뜻한 옷	▸ 따뜻한 옷, 방한모, 장갑 착용 ▸ 보온과 방수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* 물이나 땀에 젖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분의 양말 준비
따뜻한 쉼터 (휴식)	▸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**따뜻한 쉼터 설치** * 쉼터에서의 화재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예방조치 실시 ▸ **한파특보 발령** 시 적절한 **휴식 부여**
따뜻한 물	▸ 깨끗하고 **따뜻한 물** 제공
작업시간대 조정	▸ **한파주의보 : 작업시간대 조정** 또는 작업시간 단축 ▸ **한파경보 :** 추운시간대(새벽) 옥외 작업중지 또는 최소화
119 신고	▸ 한랭질환자 발생 시 즉시 **119신고** ▸ 한랭질환 증상 및 예방조치, 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

2025-산업보건실-1273

고용노동부 |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| 질병관리청

✻ 한랭질환 민감군 관리

- 한랭질환 민감군 모니터링 및 주기적으로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부여
- 한파특보 시 한랭질환 민감군 및 중작업 수행 노동자 → 추운시간대(새벽) 옥외작업 최소화

민감군이란 고혈압, 당뇨, 뇌심혈관질환, 갑상선 기능저하, 허약체질, 고령자, 신규 배치자 등이 해당

중작업이란 열량소비가 많은 삽·망치·톱·곡괭이·도끼 등을 이용한 형틀·철근·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

✻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

한랭질환	증상	응급조치 요령
저체온증	▸ 심부체온이 35℃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 ▸ 몸 떨림, 피로감, 착란, 어눌한 말투, 기억상실, 졸림 ▸ (경증) 인지장애 ▸ (중등도) 의식소실, 부정맥, 호흡저하 ▸ (중증) 혼수, 심장정지	• 체온 35℃ 미만 /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•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–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–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감싸기
동상	▸ 저온에 노출되어 피부·피하조직이 동결·손상된 상태 ▸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함 ▸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짐 ▸ 피부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짐	•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기 •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 – 신속히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–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~40분간 담그기
동창	▸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려움 ▸ 심한 경우 울혈·물집·궤양 등 발생	•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하기 •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기 •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하기
침족병/침수병	▸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 ▸ 피부가 부어오르며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띰 ▸ 심할 경우 물집·괴사·궤양 발생	•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하기 •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시키기

※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"한파대비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" 참고

✻ 겨울철 질식·미끄러짐 사고 예방

건설현장 갈탄 사용시 질식위험 예방

- 양생 시 갈탄보다는 열풍기를 사용하세요.
-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할 경우
  -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
  - 충분한 환기, 보호구 착용

빙판길 미끄러짐 예방

- 미끄럼 방지용 안전화를 착용합니다.
- 작업시작 전 빙판이나 눈이 쌓인 곳은 제설작업을 실시하고, 모래 등을 뿌려줍니다.

고용노동부 | 안전보건공단 | 질병관리청

붙임3 겨울철 화재·폭발 예방 안전수칙

2025-전문기술실-1241

동절기 화재·폭발 예방 안전수칙

동절기 화재 위험

- 건조한 기후로 정전기 발생 및 화재 발생 증가
- 강풍으로 화재 확산 위험 증가

겨울철 대표적인 화재·폭발 사고사례

정전기 관련 사고

2024	세종시 소재 사업장 용매 및 분체를 배압기에 투입 완료한 순간 정전기로 인한 화재·폭발 발생 (1월, 3명 부상)
2022	함안군 소재 사업장 폐수처리조 내 폐호스 제거작업 중 정전기로 인한 화재·폭발 발생 (12월, 2명 부상)

화기작업 및 난방기구 사용 등 관련 사고

2025	부산 기장군 소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·폭발 발생 (2월, 6명 사망, 2명 부상)
2020	군포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난로 주변 우레탄 폼 용기가 가열되어 폭발 발생 (12월, 4명 사망, 7명 부상)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정전기 관련 사고예방 핵심 안전수칙

- ☑ 작업 전 제전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전기를 제거
- ☑ 작업장 가습 및 제전복·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으로 정전기 발생 억제
- ☑ 도전성 재료 사용 및 본딩·접지를 통해 정전기 방전 억제
- ☑ 인화성 물질 주입 시 유속 억제 및 작업장 환기 실시

안전보건규칙 제325조(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) 제1항

사업주는 ①위험물을 드럼 등에 주입하거나, ②인화성 도료 및 접착제 제조·저장· 취급 또는 도포 설비 ③위험물 건조설비 등을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,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(除電)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화기작업·난방기구 사고예방 핵심 안전수칙

- ☑ 작업절차 수립 및 작업장 주변 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

- ☑ 화재감시자 배치 및 불티비산방지조치 실시

- ☑ 난방기구 과열 방지를 위해 사용 후 전원차단

- ☑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

안전보건규칙 제241조(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) 제2항

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
2.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·보관 현황 파악
3.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
4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 불꽃,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
5.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
6.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

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